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 직자 등
특1급	40	3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3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시간보상수당 20)			
1급	2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시간보상수당 12)			
2급	1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급 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시간보상수당 8)			
3급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공무원교육기관 3년이상 강의 경력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시간보상수당 5)			
4급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시간보상수당 4)				
5급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시간보상수당 3)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
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교육·평가 관련 업무·강의 3년 이상 경력자 · 전·현직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 관련 학위(석·박사) 수여자 : (산업)심리학, 교육(공)학, HRD, 경영학, 행정학 등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분		단위	지급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출제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실기·실습	문제당	20,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채점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실기·실습 채점비		1부당	3,0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시험장별 요원 2인에 대해서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주) 1. 시험관리비 지급기준은 문제·부수당·시간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의 특성 및 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당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주) 2. 시험관리비 지급기준에 없는 사항들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 이내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과정별 평가계획 등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권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4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미지급
2권역	(13개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4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편도 포함)하는 경우 일비 또는 근무지 내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무지 내 여비는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